

대출보증약관

제1조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대출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이하 “채권자”라 한다)이 피보증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대출(이하 “보증부대출”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2조 (개별보증) ① 조합은 대출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합니다.

② 대출기한은 보증기한 이내이어야 합니다.

제3조 (통지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는 보증부대출 취급점포(이하 “당해점포”라 한다)에서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대출금으로 된 때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변제기한이익을 상실시킨 때
4.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5.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보고하여야 할 불량거래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7. 조합이 채무자를 보증사고기업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한 때

② 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전신에 의한 통지를 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제1항 제1호 : 보증사고일로부터 1월 이내
2. 제1항 제2호 : 보증사고일로부터 2월 이내
3. 제1항 제3호 및 제5호 : 보증사고일로부터 10일 이내
4. 제1항 제6호 : 당해 점포가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5. 제1항 제4호 : 거래정지 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

③ 보증사고는 사고사유가 해소되면, 당해 보증사고의 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2개 사유 이상의 보증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모두의 사고사유가 해소된 때에 한합니다.

제5조 (보증부대출의 금지) ① 채권자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채권자는 근보증성격의 한도거래대출(당좌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대출거래)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 (채권충당) ① 보증사고 발생후의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대출 채권순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대전이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지정되거나, 당연히 당해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보증부대출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보증채무이행청구)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3월이 경과한 때 조합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도 등)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없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이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 관련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대출보증서약관과 관계있는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채무이행장소는 보증채무 이행통지를 한 조합의 영업점으로 합니다.

제8조 (종속채무의 범위) 조합은 보증금액범위내에서 주채무의 원금이외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당해 대출에 적용될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에 의한 이자액과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종속채무로 이행합니다. 다만, 원금과 종속채무의 합계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권리보전) ① 채권자는 경매, 회생절차·파산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의 보증채무이행 전이라도 구상권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채권자는 조합의 보증채무이행시 지체없이 보증부대출의 관련담보에 대하여 조합에게 담보물의 점유이전, 저장권의 이전등기 기타 조합이 대위한 담보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어음상 권리대위의 특례) ① 채권자는 할인어음 대출의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조합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이 어음채권의 일부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어음상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이 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보증부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고사유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외에 채무자가 당해 점포에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금등 연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연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한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면책사항)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대출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조에 정한 기간 경과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였을 때
3. 제5조(보증부대출의 금지)에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였을 때
4. 조합의 동의없이 보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5. 조합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 다만, 보증부대출금을 당좌대출거래구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제4조(보증사고)제2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통지를 아니함으로써 조합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7. 제6조(채권충당)에 위반하였을 때
8. 제10조(어음상 권리대위의 특례)에 위반하였을 때
9. 보증사고 발생후 조합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 인적담보를 해지하였을 때. 다만, 보증사고 발생전에 있어서는 조합이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에 한합니다.

제13조 (면책범위) 조합 면책범위는 조합이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